



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



수 신 내부결재

(경 유)

제 목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,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76호(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) 및 ‘26년 “안전한일터 프로젝트”와 관련
3.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·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결과에 책임을 지는 **위험성평가 중심의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**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는 모든 점검·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는 감독체계에 따라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

가. 실시시기

최초평가	- 사업장 신설, 사업의 개시 등 최초 실시 -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[대상:전체 작업]
정기평가	- 최초평가 후 매년 실시[대상:전체 작업]
수시평가 (사유 발생 시)	-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의 변경 등 - 공정의 변화, 산업재해 발생 등

4.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우리협회에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인력과 축적된 노하우, 최적의 장비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니,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·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을 수립, 실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위험성평가 컨설팅 리플릿 1부. 끝.

기안자 **선임차장** 03/30 **이만섭** **지회장** 03/30 **강종현**

협조자 **차장** 03/30 **양재영** **부장** 03/30 **고영태**

시행 전북안전컨설팅부-203 (2026. 3. 30.) 접수 ()

우 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가 37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(팔복동가) 별관층 / <https://www.safety.or.kr>

전화 063-212-4022 /팩스 0507-351-7040 /이메일 20000seob@safety.or.kr / 공개



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



수 신 사업장 대표이사
(경 유) 안전업무 담당자
제 목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,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76호(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) 및 ‘26년 “안전한일터 프로젝트”와 관련
3.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·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결과에 책임을 지는 **위험성평가 중심의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**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는 모든 점검·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는 감독체계에 따라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

가. 실시시기

최초평가	- 사업장 신설, 사업의 개시 등 최초 실시 -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[대상:전체 작업]
정기평가	- 최초평가 후 매년 실시[대상:전체 작업]
수시평가 (사유 발생 시)	-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의 변경 등 - 공정의 변화, 산업재해 발생 등

4.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우리협회에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인력과 축적된 노하우, 최적의 장비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니,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·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을 수립, 실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위험성평가 컨설팅 리플릿 1부. 끝.

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장

기안자 선임차장 03/30 이만섭 지회장 03/30 강종현

협조자 차장 03/30 양재영 부장 03/30 고영태

시행 전북안전컨설팅부-203 (2026. 3. 30.) 접수 ()

우 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가 37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(팔복동가) 별관층 / <https://www.safety.or.kr>

전화 063-212-4022 / 팩스 0507-351-7040 / 이메일 20000seob@safety.or.kr / 공개